

**LRS HVAC 응축수 설계변경
전기분야 설치공사 적격심사기준**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2026. 4.



적격심사기준

2026. 4.30 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BNPP LRS 1~4 호기 설계변경 전기분야 설치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① 적격 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
- ②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 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③ 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별지 ㉓ ~ ㉕ 참조
-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4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발행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한다.
- ② 하도급실적의 경우 완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 ③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 (경영상태 평가)

-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6조 (제출서류 등)

-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공실적증명
 -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서류
-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심사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6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 공사는 해외 전기공사이므로 영세율 적용)
-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 또는 웹메시지로 통보한다.
- ⑥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9조 (재심사)

- ①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심사분야별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5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15	별지 ㉔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인도	일반신인도	±1	별지 ㉕	
		건설안전신인도	-9 ~ +3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감점	-3	별지 ㉖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별지 ㉗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0	별지 ㉘
			수행능력 배점한도	50	
입찰가격 평가			50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bigcirc \ 50 - 2 \times \left| \left(\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를 (예정가격 - 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가 (예정가격 - A) 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	○ 기준치 × 0.5 미만	7.0
	○ 기준치 × 0.5 이상 ~ 기준치 × 0.75 미만	6.2
	○ 기준치 × 0.75 이상 ~ 기준치 × 1.0 미만	5.4
	○ 기준치 × 1.0 이상 ~ 기준치 × 1.25 미만	4.6
	○ 기준치 × 1.25 이상	3.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 기준치 × 1.5 이상	7.0
	○ 기준치 × 1.2 이상 ~ 기준치 × 1.5 미만	6.2
	○ 기준치 × 1.0 이상 ~ 기준치 × 1.2 미만	5.4
	○ 기준치 × 0.7 이상 ~ 기준치 × 1.0 미만	4.6
	○ 기준치 × 0.7 미만	3.8
③ 영업기간	○ 3년 이상	1.0
	○ 3년 미만 1년 이상	0.9
	○ 1년 미만	0.8

※ 기준치(24년도말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24.41%	142.58%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3-1) 영업기간은 공사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14.6
B+, B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3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5조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인도 평가기준

(1) 일반신인도(±1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 사항	3)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3.0 -5.0 -7.0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다. 환경 제재 처분	5)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일자리 창출 관련	6) 일자리창출 실적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9점 ~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중대재해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5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2.0 -3.5 -5.0
나. 재해예방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을 받은 자	+1	A. KOSHA-MS B. ISO-45001	+1.0 +0.8
다. 건설제재처분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6)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주)

- 1)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신인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1) 일반신인도 : 심사항목별 평점 합산 × 1/3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 2-2) 건설안전신인도 : 심사항목별 평점 합산

-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5)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 6)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 등"이라 한다)을 입찰신청마감일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 7) 일반신인도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8) 일반신인도 '라'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8-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8-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8-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8-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1) 표준

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용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8-7)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9) 건설안전신인도 '가'목 내지 '다'목에 관한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10) 건설안전신인도 '가'목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 11) 건설안전신인도 '나'목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 12) 건설안전신인도 '나'목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1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서식 4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 건설안전신인도 '다'목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평가기준

1. 평가항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2.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 가.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 나.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 (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 다.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 라.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 마.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3.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0.5점이상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1점이상 2점미만	-0.8	
2점이상 4점미만	-1.2	
4점이상 6점미만	-1.6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1) 작성요령 등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별로 작성한다.
3.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4.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비를 제외한다.
5.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비교란에는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자재비와 당해 공사 하도급계약의 낙찰률(백분율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을 명시하여야 한다.
7.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1차 기성 시까지 제출한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관리 계획서 심사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9.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10.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1.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 국내 입찰자가 UAE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아래 주2)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평가방법

1. 하도급 비율 (배점 5점)

-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하도급 비율(C/A)	40% 이상	30% 이상
평 점	5	4

2. 하수급 비율 (배점 5점)

-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하수급 비율(D/C)	82% 이상	80% 이상	77% 이상
평 점	5	4	3

※ 단, 하도급 할 공사에 대한 발주기관(발주자) 설계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D/B)이 64% 미만일 경우 하수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4점을 부여한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가. 평가계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나. 노무비의 적정성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노무비 반영비율 = 노무비 / 입찰서의 공급가액

- 배점 : 7점

노무비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 수	7	6	5

다.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정성 평가

-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제경비 반영비율 = 제경비 / 입찰서의 공급가액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구 분	기준율 대비		
제경비 반영비율	100% 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이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입찰서에 첨부(내역입찰의 경우)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의한다.
3.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4. 노무비 및 제경비의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문에 발표 예정)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별지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사 'BNPP LRS 1~4 호기 LRS 설계변경 전기분야 설치공사'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사 동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서식 2)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업면허증, 입찰참가자격요건 사본
 3. 발주기관 발행 시공실적증명서(별지서식 3)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시공실적 증명서(별지서식 3)
 4. 경영상태 관련 증빙서류
 5.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6. 하도급 관리 계획서(별지 ㉓, 필요시)
 7. 입찰금액산출내역서(필요시, 내역입찰외는 심사대상자에게 공내역서 제공함)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9. 기타 필요서류

한국전력공사(주) 사장 귀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공고번호	
입찰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 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인)
공사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 담당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경영상태 (체크) <input type="checkbox"/> 재무비율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일반			
		건설안전			
	산업재해 별점 마일리지 감점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					
합계		100			
총평점		100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계 약 금 액		
	착공일자		시공누계금액		
	준공일자		미 시공금액		
계약의 종류	원도급(), 하도급(), 기타()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시 공 금 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업종(등록)별 00년도공사내용					
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III. 불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